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60056] www.icoops.net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6.01.18] icoopsnet@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29]



정 보 공 개 서

(주)아이쿱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아이쿱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B1층 124호(마곡동, 이너매스마곡2)

TEL : 1588-1883 FAX : 02-511-9444

가맹사업본부 쿼톡 담당 : 1800-9019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아이쿱스	퀵톡(QUICK TALK)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B1층 124호(마곡동, 이너매스마곡2)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4.09.11	2014.09.25	박 성 순	1588-1883	02-511-9444
	법인등록번호	110111-5511062	사업자등록번호	201-86-4226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박 성 순	퀵톡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B1층 124호(마곡동, 이너매스마곡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 성 순	1588-1883	02-511-944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내이사)	안 현 수	퀵톡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B1층 124호(마곡동, 이너매스마곡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 성 순	1588-1883	02-511-9444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외이사)	윤 의 숙	퀵톡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B1층 124호(마곡동, 이너매스마곡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 성 순	1588-1883	02-511-944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퀵톡]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퀵톡	퀵 스마트폰 접수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상 호	퀵톡 000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1-0252492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퀵톡, QUICK TALK	

퀵톡 브랜드 홍보를 하는 홈페이지는 www.icoops.net입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794,807	400,000	394,892	853,827	30,927	33,268
2023년	736,522	265,424	471,098	685,540	75,587	76,205
2024년	710,500	93,702	616,797	738,147	159,130	145,699

그 근거자료는 [별첨] 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성순	대표이사	2015.1 ~ 현재	대표이사	경영총괄
	안현수	사내이사	2015.1 ~ 현재	이사	경영관리
	윤의숙	사외이사	2015.1 ~ 현재	이사	경영지원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은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제39류	출원 2012.02.16. 등록 2013.02.21.	출원번호 : 41-2012-0005092 등록번호 : 제41-0252492호	박 성 순	2023.02. 21.

본 서비스표 등록사용을 소유자(박성순)가 당사((주)아이쿱스)에 2016년 1월 13일 ~ 2023년 2월 21일까지 [별첨]서비스표권 사용 계약서에 따라 허가함으로써 당사가 권리를 행사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퀵톡 가맹사업 현황

1. [퀵톡]을 시작한 날 : 2014년 9월 25일(추정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4년 9월 25일)

2. [퀵톡]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아이쿱스	퀵톡 (QUICK TALK)	박성순	2014. 9 ~ 현재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B1층 124호(마곡동, 이너매스마 곡2)

3. [퀵톡]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퀵톡 (QUICK TALK)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배달	퀵서비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퀵톡]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	12	1	14	13	1	14	13	1
서울	4	3	1	5	4	1	5	4	1
부산	1	1	0	1	1	0	1	1	0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1	1	0	1	1	0	1	1	0
대전	1	1	0	1	1	0	1	1	0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2	2	0	2	2	0	2	2	0
강원	1	1	0	1	1	0	1	1	0
충북	1	1	0	1	1	0	1	1	0
충남	-	-	-	-	-	-	-	-	-
전북	1	1	0	1	1	0	1	1	0
전남	-	-	-	-	-	-	-	-	-
경북	1	1	0	1	1	0	1	1	0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퀵] 가맹점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1	1	0	0	0	12
2023	12	1	0	0	0	13
2024	13	0	0	0	0	13

6. [퀵]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말 가맹점수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3							
서울	4							
부산	1							
대구	-							
인천	-							
광주	1							
대전	1							
울산	-							
세종	-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							
전북	1							
전남	-							
경북	1							
경남	-							
제주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2	2,197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나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퀵톡]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4년간	4,068	4,068	0	
광고 및 판촉	소계		4,068	4,068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정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을지로지점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92	02-2266-419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최초가맹금과 보증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당사가 지정한 [기업은행]에 계약체결후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개시 이후에 최초 가맹금을 납부하거나 당사가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고 바로 당사에 납부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营业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2항 각호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퀵톡]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차량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갖추어야 할 장비나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대상	확정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대상	확정금액
월 상표사용료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 비대상	확정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950]				
가입비	3,300	정보공개서 제공 일로부터 14일이 후 ~ 영업개시일 까지	영업 개시 이전까 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이후	반환시 당사에서 정 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 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시스템등록비	550				
기본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 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 환되지 않음
개점행사비	진행시 별도 산정		영업개시 이전까 지 계약 해지	영업개시 행사 를 위한 소요된 실제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 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
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1,000	정보공개서 제공일 로부터 14일이후 ~ 영업개시일까지	월 상표사용료 및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자재대금 및 판촉비 미지급 혹은 BI 미제거시 등	부가세 없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5,950
가입비	3,300
시스템등록비	550
교육비	1,100
보증금	1,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기준평수 : 33(㎡)]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30,800~ 32,450]	[3,080~ 3,245]			
차량비 및 차량 도색 등	자체시공	6,600		도색 등 완료시 지급	도색 등 이전 계약취소	비통일 기준 준수필요. 단, 무점포개점시 인테리어비용 없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자체시공	11,000	1,1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비용	자체시공	3,300		설치후 즉시	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외적공사비	자체시공	2,200~ 3,300	220~ 330		공사 전 계약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6,6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유니폼 등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1,100~ 1,65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그간 소요비용 제외)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입점지역 선정 → 후보점포 확보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입점할 점포선정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는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점포의 입지분석, 해당 점포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제에 대한 충족여부 분석, 점포임대차 협상 및 임대차, 권리금 계약의 체결을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의 : 당사 담당팀 (전화 : 1800-9019)

당사는 전국 가맹점 설치 예정지역을 사전에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사업희망자를 우선 배정하지만, 가맹점사업희망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없는 지역에 배정되도록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지입차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구비한 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क्ष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공급업체 및 물품내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최초 가맹금에 대해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주)아이쿱스	월 330	다음 월 10일	후불로 반환없음		오토바이, 다마스, 라보
상표사용료	(주)아이쿱스	월 330	다음 월 10일	후불로 반환없음		화물, 탑차
광고분담금	(주)아이쿱스	후불방식	다음 월 20일	미 시행시 반환	시행	
판촉분담금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훈련비	(주)아이쿱스	110	교육 실시	미	시행	교육 필요시 지급

			10일 이전	시행시 반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자체시공	1,000~2,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자체시공	견적가의 30~40%를 제외한 나머지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자체시공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7페이지 참조
프로그램 사용료	(주)아이쿱스	매출액의 1%	다음 월 5일			
지연이자	(주)아이쿱스	연 15%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 가맹사업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형태가 아니라 전년도 차액가맹금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서비스 품질관리
- ②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허가 취득 사항
- ③기본(차량, 유니폼, 기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 ④가맹본부의 브랜드 유지 및 침해여부
- ⑤광고시 당사 기준 준수 여부
- ⑥경영지도
- ⑦배송요금 준수여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만료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중 발생한 미수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지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퀵톡] 운영권은 가맹본부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즉시 서비스표와 상호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영업표지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제거 및 폐기한 후 그 증빙을 당사에 제출하여 종료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②귀하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계약 만료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 계약만료 익일부터 제1항의 종료를 확인받을 때까지 계속 상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③귀하가 계약의 종료 및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종전의 서비스표 및 영업표지물을 사용하거나 부착하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 체결시부터 매월 부과된 상표사용료를 해당하는 금액의 2배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④당사는 제1항의 종료 확인(A/S 등 피해분쟁 완료 포함)후 2개월 이내에 귀하에 대한 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은 카드납부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본인의 의사 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중도해지함) 이후에는 각각의 사업과 명예를 존중하고 계약해지의 원인에 대해 그 어떤 이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퀵서비스(오토바이/차량)	퀵톡의 규정상표가 도색된 차량, 유니폼, 기타 배달서비스 상품 등	1회 위반 : 구두 경고	절차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
배달대행서비스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당일배송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기타 배달서비스상품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제한없음	퀵서비스, 배달대행, 당일배송 등	가맹본부와 협의되지 않는 부가상품 판매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가능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퀵서비스, 배달대행, 당일배송 등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본요금 및 옵션요금 (주말/휴일, 기상악천후 등 사유로 차등적용)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가격은 옵션 품목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유동적임.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퀵서비스, 배달대행, 당일배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퀵톡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읍, 면, 동) 및 행정구역(읍, 면, 동)일부마다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거리기준은 없음	별지에 영업지역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
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
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퀵
톡’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
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
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
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
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 퀵서비스라는 당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점매출을 알 수 없어,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비중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특약]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만료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중 발생한 미수금은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지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 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 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 차량·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 등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콕톡]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월 상표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관청의 자격요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퀵서비스 등 배달서비스상품의 품질 기준을 3개월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 노후화 장비(차량, 자재 등)의 교체나 보수(차량도색을 포함)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작업중 규정된 복장과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 6. 퀵서비스 등 요구하는 고객과 체결한 배달서비스운송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월 2회 이상 직접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퀵서비스 등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A/S처리를 월2회 이상 고의로 지연 또는 회피하는 경우 8. 배달서비스상품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고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9. 영업지역, 영업표지물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0. 계약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14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제14조 제2항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서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시 재개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서 수정동의에 따른 별도의 추가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30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세부절차는 담당팀 문의 : (1800-901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때 가맹점의 설비 등을 제외한 가맹비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의 승인하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내용중 특약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상속인이 가맹점 운영능력이 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 1개월이내 관련 서류 제출	상속 개시후 동일한 권리 관계로 재계약.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신청 → 가맹본부 승인 → 관련 서류 제출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귀하가 [퀵톡]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퀵서비스, 배달대행서비스, 당일배송 등 배달하는 서비스 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세부절차는 담당팀 문의 : (1800-901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퀵톡]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문의 : 담당팀 (1800-90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 없음	필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브랜드관리	참여도	담당자 현장실사 → 체크리스트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	가맹본부 담당팀	
	차량				
	자재사용				
	유니폼				
고객서비스	성실도	담당자 수시 현장실사 → 체크리스트 작성 → 완료	부정기		
	친절도				
	청결				
CS품질 관리	서비스품질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고객불만 등)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부정기		
	고객만족도				

[당사는 관리·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서비스품질 등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규정준수 여부, 단계별 서비스 내용 등을 현장에서 체크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재계약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리·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아이쿱스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쿼크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가맹본부의 주도하에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부담비율과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사업자부담		
광고 전체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수비용에 따라 분담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판촉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당사의 승인하에 귀하의 부담으로 공동발전을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쿼크 000점”의 명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쿼크 가맹점용 프로그램활용법 및 배달서비스기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정보공개서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 인터넷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D-45~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9~36	
가맹계약 체결	- 각종 제출 서류 준비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5(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3~22(2일)	무점포 가맹점계약자는 제외.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1(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0~14(7일)	
개설 준비	- 시설 및 장비 구입 / 차량 도색 등	D-14~11(3일)	
준비상황점검	- 시설 및 장비, 차량 도색 완료 확인 - 각종 서류 제출	D-11~10(2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1	
사업 개시	- 영업시작	D-day	

귀하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차량,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안 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 유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 적인 영업에 현 저한 지장을 주 는 경우	♣간판 등 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 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 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 할 지급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 지급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그러나 무점포사업의 경우 점포환경 개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비의 노후개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에게 고품격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장비(차량, 자재, 유니폼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상시 도색의 선명성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시설장비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차량의 안전과 이미지 유지 등 가맹점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인 점을 감안,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서비스)활동에 대한 지도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자체 기준에 의거	신규고객창출률 저하, A/S반발, 서비스품질 불량 등	1차 : 현장방문, 서비스전과정, 계약진행과정, A/S처리과정 체크 2차 : 사업자 면담, 현장방문시 확인한 사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 및 교육	가맹본부 부담	문의 : 가맹사 업부
가맹점사업 자의 요청	A/S처리 방법, 신규고객창출률 증진방안, 관련법령 이해 등	가맹본부 사무실 방문 - 사항별 현황 및 방안설명, 사례중심 교육, 현장실습 - 우수 가맹점사업자 현장 실습	가맹본부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쿡톡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쿡톡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신규교육 브랜드이해, 서비스품질방침, A/S처리 방법, 신규고객창출증진방안, 광고 홍보방안, 홈페이지 활용방법 등	실습교육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영업개시전 1회)	필수 교육
	현장실습 교육	현장실습		
정기교육	서비스품질교육	강의	매년 1회 이상 실시	필수 교육
특별교육	퀵서비스 등 배달서비스 품질저하, A/S과다, 법령개정이나 주요방침변경 전달, 현장학습 등	강의외 현장학습	필요시	필요시 교육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가맹계약자가 계약 전에 교육을 희망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교육이 가능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퀵톡]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 교육	신규교육	8시간	1,100	최초 계약시 이수
	현장실습	20시간		
정기 교육		2시간 내외	비용발생시 협의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3시간 내외		필요시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불참시 보충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불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오더 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 평가 등에서 감점의 요인이 되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전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주)아이쿵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B1층 124호(마곡동, 이너매스마곡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10년 3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738,147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으로 가맹사업 및 직영점 포함 매출액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부(1800-901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icoops.net]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2022/2023/2024년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